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도급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는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과장,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득하는 방식으로 일일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2월에 1회 이상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가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참여 사업주 서명을 받아 원청소장에게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내용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월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장 순회점검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ex. 현장소장)가 직접 순회점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근거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노사합동점검은 2월에 1회 이상 하되, 점검반의 구성은 원수급의 대표 및 그 소속근로자, 하수급인의 경우 그 대표자 및 소속근로자로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하여야 합니다.(반드시 각각의 노사 대표가 참여하여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점검표의 작성은 안전관리자가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통상 이런 합동점검의 경우 안전관리자도 동참하므로)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을 첨부하여야 하며 결재시스템은 각 당회 회사의 시스템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건설공사에서 내역서상에 폐기물 처리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안전시설물의 폐기물 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Answer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 사용료 등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문과 같이 안전시설물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저희 현장에서는 1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받고 있어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을 보면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자 임금과 당해 현장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1년 정산한 퇴직금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Question

종업원 350인의 중견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노사협의회 위원이 중복되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회로 같음한다. 다만, 노사협의회 개최시 산업안전보건관리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는다.」라고 노동조합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님.)

1.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같음코자 할 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모두를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2.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한다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느 쪽으로 위촉하여야 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Answer

귀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같음하기로 한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모두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사용자가 선임하는 것이므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의 위촉에 있어서도 마땅히 사용자측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할 것입니다. 